

## 「2025년 제주수산물 수출협력 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사업」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「2025년 제주수산물 수출협력 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사업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4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### 1. 신청자격

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
- 도내 수산물(수산식품) 가공·수출분야 단체  
\*(사)제주수산물수출협회, (사)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가공유통협회 등

### 2.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5년 제주수산물 수출협력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5. 12. 31일까지
- 사업비: 112,000천원(보조 100,000천원, 자부담 12,000천원)
- 지원보조율: 보조 90%, 자담 10% \*단,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가능

### 3. 세부 지원내용

구분	사업내용
지원내용	○도내 수협(단체)에서 수출마케팅(해외시장개척)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후 후속조치(수출계약 또는 상담)를 위해 해외 유력 바이어(또는 관계자)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항공료, 체제비, 행사비 등 일부 지원
지원한도	○ 수협(단체) 당 최대 30백만원(2회 이내)

<세부 지원기준>

구 분	사 업 내 용
지원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국내외 항공료 및 교통비) 이코노미석 기준 실비지원 (비즈니스석인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처리)</li> <li>○(숙박비) 실비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박당 1인 10만원 이내,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</li> </ul> </li> <li>○(식사비)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함</li> <li>○(통역비) 1일당 한화 30만원 범위내</li> <li>○(행사운영비) 현수막, 물품임차 등 행사운영 시 필요한 경비</li> <li>○기타 행사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</li> </ul>
추가행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초청경비 지원과 병행하여 수출상담회, 수출계약, 해외바이어 등과 업무협약식 개최 시 행사 소요경비 추가지원</li> </ul>
자부담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기념품비, 지원기준 초과금액, 각종 수수료 등</li> </ul>

○ (우선순위)

- (1순위) 최근 2년간(2023년 ~ 2024년) 제주수산물 수출 관련 해외업체(기관)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수협(단체)
- (2순위) 제주수산물 수출실적이 우수한 수협(단체)
- (3순위) 제주수산물 수출실적은 저조하나 해외 수출의지가 있는 수협(단체)

\* 단, 보조금 심의 시 결격사유 및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

**4. 접수 및 제출서류**

- 접수기간: 2025. 2. 5.(수) ~ 2025. 2. 19.(수) \*15일간
- 접수장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(자원유통팀)
- 접수방법: 직접 방문 접수(2025. 2. 19.(수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  
\*파일 별도 e-메일 송부(ksc5578@korea.kr)

○ 제출서류

**< 필수 제출 >**

- (1)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(서식 1) 및 보조금교부신청서(서식 2) 1부.  
\*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.
- (2) 사업계획서(서식 3) 1부.
- (3) 해외바이어(관계자) 초청 사업 추진계획(서식 4) 1부. \*해당되는 경우
- (4) 참여업체 인지조서 및 협약서(서식 5) 1부. \*참여수협(기업)별 작성
- (5) 신청하는 사업의 사업비 산출근거(견적서 등) 1부.
- (6) 단체의 경우 단체소개서(서식 6)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.
- (7) 신청/참여 수협(업체) 가공업 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.
- (8) 2025년도 예산서 등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.
- (9) 보조사업 관리카드(서식 7) 1부
- (10)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\*신청단체 및 참여업체

**< 선택 제출- 해당사항 있는 경우 >**

- (1) 참여수협(업체) 수산물 수출실적증명서(최근 3년) (서식 8) 각 1부.
- (2)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·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최근 3년간(2022.1.1.~2024.12.31.)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
- (3) 최근2년(2023~2024) 참여수협(업체) 수출 관련 해외기업(기관)과 업무협약서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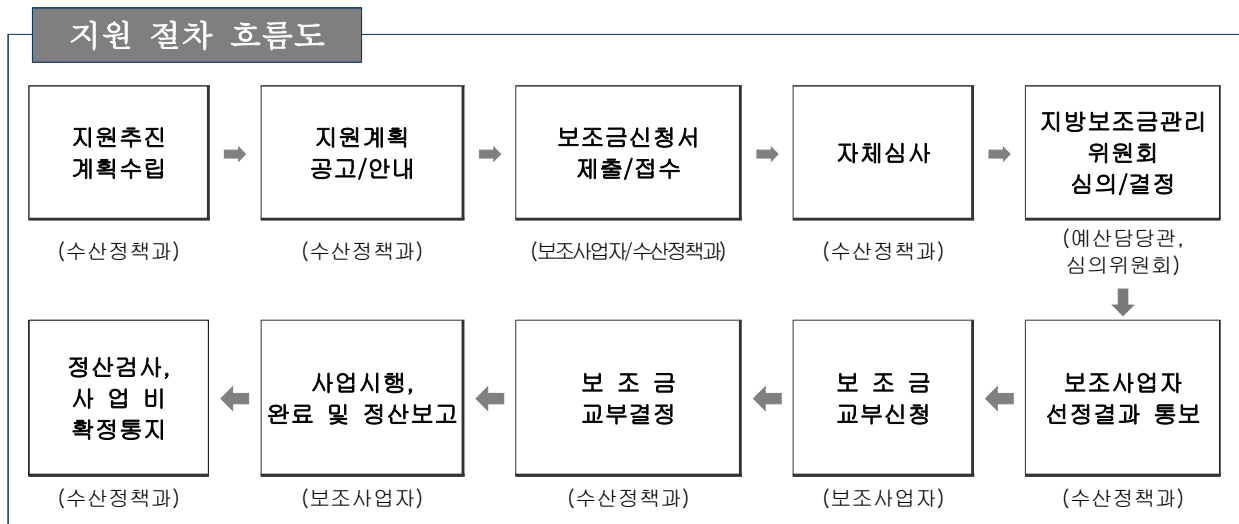
○ 유의사항

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지원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함)는 반드시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
- 필요시 신청자(참여업체 포함)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본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(참여업체 포함)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
(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)
-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

## 5. 심사 및 통보

- 별도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·결정
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·의결 후 결과 통보

## 6. 추진절차



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7. 문 의 처 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(☎064-710-3296)

**붙임** 신청서식 각 1부. 끝.

## 〈 유 의 사 항 〉

### 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자부담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### 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### 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-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
-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

### 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### 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(☎064-710-329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서식 1]

##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1. 보조사업명 : 2025년 제주수산물 수출협력증진 해외바이어 등  
관계자 초청경비 지원사업

2. 보조사업 신청자

- 명 칭(성 명) :
- 소재지(주 소) :
- 전 화 번 호 :

3.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

- 
- 

4. 보조사업 소요경비

(단위 : 천원)

총사업비	보조금	자부담	기타

5. 보조사업 기간

6. 기타사항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.

붙임 : 사업계획서 1부

2025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자(기관명 및 대표자) :

직인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

# 사 업 계 획 서

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5년 제주 수산물 수출협력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보조금 교부결정일 ~ 2025. 12. 31.일까지
- 사업내용 :

- 경비총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(보조율            %)
- 보조금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- 자부담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
보조사업 수행계획 (단위 : 천원)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 고

보조사업의 효과

- 
-

□ 사업비 집행계획

가. 지방보조금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00행사 개최	임차비	500	· 부스 대 *00천원=    천원  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→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

나. 자부담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
<작성요령>

- ① 사업내용 : 단위(세부)사업명을 기재
- ② 예산비목 : 홍보비, 인쇄비, 강사료, 교통비, 식비, 임차료 등으로 구분
- ③ 금    액 : 천원 단위로 작성(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)
- ④ 산출내역(기초)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  - 세목 기재방법 : 단가(원)×회(명, 부 등) = ○ ○ ○ 천원
  - 산출내역(기초)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

[서식 4]

## 제주수산물 수출협력증진 해외바이어(관계자) 초청 사업 계획서

신청기관(단체) 정보

회사명 (대표자)		주소	
		전화	
담당자	성명	사업자등록번호	
	연락처	핸드폰 : 이메일 :	생산품목

초청바이어(관계자) 및 초청목적 (계약 목표 포함)

초청 바이어 (관계자)	초청바이어 (관계자)	국가/도시	/
		소속(직위) /성명	/
	초청내용	체류기간	2025. . . ~ 2025. . .
		초청목적	
연계 경로	바이어(관계자)와 연계된 경로 등 초청과정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		
초청 목적	(예) 수출계약 000품목, 000만불 추진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 점검및 세부사항 협의 등 바이어와의 상담 및 협의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		

□ 주요 세부행사 계획

- 간담회, 업무협약식, 도내 기업 현장방문 등

□ 기대효과

- 향후 해외바이어(관계자) 초청으로 인한 기대효과  
(예, 업무협약, 수출협약, 수출확대 등)

※ 초청 바이어 관련 자료 추가

[서식 5] (참여수협 및 참여단체 작성)

## 참여수협(업체) 인지조서 및 협약서

당 사는 「2025년 제주수산물 수출협력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사업」에 신청하며, 아래 사항에 충실할 것을 약속합니다.

1.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,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지거나, 동일내용에 대하여 타기관(부서)등에서 중복지원(또는 지원예정)을 받았을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감수한다.
2.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, 참여수협(업체)로 선정될 시 본 사업의 관련규정 및 운영 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.
3. 당 사는 '2025년 제주수산물 수출협력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사업'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,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청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.
4. 당 사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(참여수협(단체))로 선정 된 이후 당 사의 귀책사유(고의 불참, 중도 포기 등)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,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3년간 수출지원사업 지원배제 등 책임을 감수한다.
5. 당 사는 본 사업의 선정 이후 수출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요청이 있을 시 향후 1년간 적극 협조한다. 단 정보는 수출관련 정책 반영 및 통계 기초자료에만 사용된다.

2025년    월    일

참여기업 :

대 표 : (인)

**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**









< 2024년 >

품 목	수출일자 (선적일기준)	물량 (kg)	FOB금액 (\$)	수출국가	일련번호
합 계					
소계					
냉동갈치					23-1
냉동갈치					23-2
소계					
냉동삼치(필렛)					23-3
냉동삼치(필렛)					23-4
					23-5
					23-6

붙 임 : 수출신고필증(일자별 각1부)

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 일

신청업체    업 체 명 :

대 표 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주 소 :